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12.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12. 23
- 다. 상 정 일 자 : 97. 12. 23 (제59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위원회)

2. 제안 설명요지

- 가. 제 안 자 : 보건소장 이 대 현
- 나. 개정사유
 - 보건소법이 지역 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의 관장업무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함.

다. 주요내용

- 가.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안 제1조)
- 나. 화순군 보건소 관장업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 (안 제3조 제1항)
 - 1)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 2) 노인 보건사업
 - 3) 응급 의료에 관한 사항
 - 4) 정신 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 5)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등

- 다. 음용수에 관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징수하도록 신설 (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과 보건소의 관장 업무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하는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8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장업무) ①화순군보건소의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의 예방, 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사항
7.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 의사, 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사항
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사업

제6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10조 제3항의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0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음용수에 관한 수질검사 수수료는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의
수수료에 의거 징수한다.

(별표3) 중 제1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3조 (관장업무)</p> <p>①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보건사항의 계몽에 관한사항 (보건에 대한 계몽교육 선전등)</u> 2. <u>보건통계에 관한사항 (출생, 사망 질병을 비롯한 보건에 관한 모든 통계)</u> 3. <u>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u> 4. <u>학교보건과 구강위생에 관한사항 (각급학교 및 교사의 건강관리 및 보건시설의 향상과 관리)</u> 5. <u>의료사업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 (의료업에 관한허가 및 등록개설 신고등의 사무관리와 지도단속)</u> 6. <u>보건에 관한 실험과 검사에 관한사항 (병리, 실험검사, X-선 등)</u> 	<p>제1조 (목적) - - - <u>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8조</u> - - - - - - - - - - - - - - -</p> <p>제3조 (관장업무)</p> <p>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u> 2. <u>전염병의 예방, 관리 및 진료</u> 3. <u>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u> 4. <u>노인보건사업</u> 5. <u>공중위생 및 식품위생</u> 6. <u>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사항</u>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7. <u>결핵, 성병, 나병등 기타 질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사항(만성질병 환자의 등록, 진단, 예방과 기타질병의 진료에 관한사항)</u>	7. <u>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사항</u>
8. <u>축탁의사 지도에 관한사항(보건소 산하에 배치되어 있는 공의의 업무지도)</u>	8. <u>응급의료에 관한 사항</u>
9. <u>의약에 대한 지도에 관한사항(의료약업에 대한 허가등록 개설 신고 등의 사무처리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u>	9. <u>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 의사, 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사항</u>
10. <u>모자보건과 가족계획에 관한사항(임산부등록,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가족계획에 관한 계몽선전 지도등)</u>	10. <u>약사에 관한사항과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u>
11. <u>특수 지방병의 연구에 관한사항</u>	11. <u>정신보건에 관한사항</u>
12. <u>마약지도에 관한사항(마약법에 의한 면허 지도감독 및 마약사범의 단속)</u>	12. <u>가정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사업</u>
13. <u>일반 및 치과진료</u>	13. <u>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u>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4. <u>모자보건센터 운영에 관한사항</u>	14. <u>보건에 관한실험 또는 검사에 관</u> <u>한 사항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u> <u>관한 사업</u>
15. <u>기타 주민보건향상과 증진에</u> <u>관한 사항</u>	15. <u>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u> <u>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u>
(신 설)	16. <u>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u> <u>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u> <u>사업</u>
제6조 (진료비등)	제6조 (진료비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진료수는 <u>보건사회부장관이</u>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 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 한다.	② - - - - <u>보건복지부장관</u> - - - - - - - - - - - - - - - - - - -
제7조 (약가) ①진료에 수반하여 사용 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 징수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의약품,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u>보건</u> <u>사회부 행정지도</u>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약가) ① - <u>보건</u> <u>복지부</u> - - - - - - - - -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 (증명발급수수료)</p> <p>① ~ ② (생략)</p> <p>③자궁내장치 시술비중 자비부담은 보건사회부에서 정한 피임보급단가에 의거 징수한다.</p> <p>(신설)</p> <p>(별표3) 1 - 11 (생략)</p> <p>12. <u>음용수에 관한 시험(수질검사)</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세균학적 검사 1통 4,000원</u> ○ <u>이화학적 검사 1통 2,000원</u> 	<p>제10조 (증명발급수수료)</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p> <p><u>보건복지부 - - - - -</u></p> <p>- - - - -</p> <p>④음용수에 관한 수질검사 수수료는 <u>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u> 수수료에 의거 징수한다.</p> <p>(별표3) 1 - 11 (현행과 같음)</p> <p>12. <u>(삭제)</u></p>